

## IV. 관련 판례

### □ 비거주자 판단

사건번호	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63616 , 2016.03.25
제 목	비거주자 여부 사실판단
요 지	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

사건번호	대법원-2013-두-16876 , 2014.11.27 ,
제 목	원고는 한·일 조세조약상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함
요 지	한국과 일본의 거주자에 해당하고 항구적 주거도 양국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나 ·국내에서 적극적인 경제·사회봉사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점, ·국내에서 거액의 자금을 대여하거나 투자한 점, ·일본에서는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가 한국으로 인정되므로 한·일 조세 조약에 따라 한국 거주자로 보아야 함

사건번호	대법원2010두15056 , 2011.04.28
제 목	국외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비거주자에 해당함
요 지	주식을 양도할 당시에 국외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소득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함

## □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

사건번호	서울고등법원2010누19562 , 2010.12.17
제 목	비거주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
요 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원고의 남편은 군무원인 점,</li> <li>· 원고는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점,</li> <li>· 나머지 가족들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</li> <li>· 비거주자에 해당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</li> </ul>

사건번호	서울고등법원-2016-누-51988 , 2016.12.07
제 목	비거주자가 출국후 2년 경과한 후 국내 주택 처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
요 지	<p>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2006. 2. 9. 개정되기 이전부터 비거주자였던 자가 2008년 이후 국내 주택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</p>

사건번호	서울고등법원2008누30467 , 2009.04.22
제 목	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하여 양도한 1세대1주택은 비과세 요건이 아님
요 지	<p>주택의 취득 당시 거기에 원고의 부친과 여동생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국내에 주소나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주자였다고 보기는 어렵고, 이미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과세 주장은 이유없음</p>

사건번호	서울행정법원-2014-구단-14061 , 2016.02.16
제 목	원고는 비거주자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
요 지	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미국으로 이주를 위한 출국일임을 자인하는 날 이후로 원고가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.

## □ 비거주자의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

사건번호	조심2013서4322 , 2014.02.12
제 목	비거주자인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
요 지	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비거주자인 청구인에게 장기 임대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

사건번호	조심2012서3383 , 2012.10.04
제 목	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(1세대 1주택, 최대 80%)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기 어려움
요 지	소득세법§95·②·단서에서 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, 대통령령은 ‘1세대’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함께 구성하는 1세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, 비거주자에게는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기 어려움